

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안 번호	4213
----------	------

제안연월일 : 2016. 12. .

제안자 : 환경노동위원장

1. 제안경위

가. 박남춘의원(2016. 5. 30), 노웅래의원(2016. 5. 30), 박주선의원(2016. 6. 7), 조정식의원(2016. 6. 7), 김삼화의원(2016. 6. 14), 이용득의원(2016. 8. 10), 이정미의원(2016. 9. 7)이 각각 대표발의한 총 7건의 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」 일부개정법률안은 2016년 11월 21일 제346회 국회(정기회) 제6차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,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고용노동소위원회에 회부함.

나. 2016년 11월 25일 제346회 국회(정기회)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위 7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, 각 개정안 내용의 일부를 반영한 대안을 마련하여 이를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.

다. 2016년 11월 28일 제346회 국회(정기회) 제7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용노동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받고, 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법률 제11792호 부칙 제2조에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정원의 3%를 청년으로 고용해야 하는 의무조항의 유효기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으나, 이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(법률 제11792호 부칙 제2조).

법률 제 호

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법률 제11792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“2016년”을 “2018년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법률 제11792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(유효기간) 제5조의 개정규 정은 <u>2016년</u> 12월 31일까지 효 력을 가진다.</p>	<p>법률 제11792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(유효기간) ----- ----<u>2018년</u>----- -----.</p>